

화평법(K-REACH)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화관법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

2015년 1월 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각각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화관법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화평법 개정으로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에 대한 세부일정을 도입했습니다. 톤수범위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은 1000톤 이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19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하는 자는 동법에 따라 2030년까지 톤수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화학물질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신규화학물질 0.1톤 미만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등록 대상 :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톤수범위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은 1톤 이상 CMR 및 1000톤 이상은 2021년까지, **100~1000톤은 2024년**, 10~100톤은 2027년, 1~10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간 톤수범위	등록유예기간
1000톤 이상 및 1톤 이상 CMR물질	2021년 12월 31일
100~1000톤	2024년 12월 31일
10~100톤	2027년 12월 31일
1~10톤	2030년 12월 31일

해당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인지 확인
- 해당 의무사항 확인
 - 화학물질 사전신고 여부 확인
 - 톤수범위에 따른 등록 여부 확인
 - 화학물질 신고 여부 확인
 - 등록면제 또는 등록면제확인 여부 확인
 - 제품 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 여부 확인

Intertek의 역할

- 화평법(K-REACH) 컨설팅 서비스
- 화학제품안전법(K-BPR) 컨설팅 서비스
- 산안법(K-OSHA) GHS MSDS 컨설팅 서비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GHS Label) 컨설팅 서비스
- 화학물질 해외규제대응 서비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서비스, 대만 화학물질 규제대응(TCCSCA/OSHA) 서비스)
- 글로벌 식품접촉(Food Contact) 규제대응 서비스
- 미국 FDA/EU 재활용 플라스틱 인증 서비스



Headquarter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 인터텍빌딩(당정동)

Seoul Lab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성수동2가, 아주디지털타워 1층)

Ulsan Lab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81번길 28, 3층

+82 31 8069 3707

Eunhae.Lee@intertek.com

www.intertek.com